

特別檢事の職務等に関する法律

1. 법률안의 제안취지

정치와 경제 분야의 핵심인물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검찰의 수사를 이미 받았으며,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마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덮어 버리고 사건의 일부만을 다루고 종결되어버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한보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은 또한번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였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검찰권의 행사를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버린 지금의 검찰에 남겨둘 수가 없으며, 특별검사제의 도입으로 부정부패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받고 나라를 바로세우기를 염원하여 이러한 입법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이다. 공익의 입장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며 나아가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의 노릇을 한다. 검찰권의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행사 없이는 한나라의 사법적 정의가 파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력의 주변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자신이 올바르게 지켜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자율성을 잃어 왔다. 수많은 대형부정과 부패사건, 권력의 남

용과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 내고 그 진실에 따라 처리한 적이 있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검찰은 권력의 앞에 칼날을 곤두세우기 쉽지 않음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웃의 많은 나라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검찰권의 행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독일의 참심제, 영국과 미국의 기소배심제,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발전시켰다. 통상의 검찰이 담당하여 공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따로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나라(미국)도 있다. 검찰권은 넘볼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검찰권을 부여한 것이 국민이며, 부여한 권리의 행사를 감시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된 권리이다. 이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죄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특별검사제의 도입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1988년 제144회 국회 당시 5공청산과 관련하여 야당에서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1995년 7월 참여연대에서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수사미진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1996년 10월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원 112의 발의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검사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동안 수차례 재야 법조계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진행되어 온 특별검사제 논의를 재차 입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민변과 참여연대에서는 '特別檢事의 職務等에 관한 法律'案을 기초하고 진전된 논의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 그 입법을 청원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여야를 떠나 박차를 가하여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땅에 떨어진 정의의 바로 세우기를 바랄 뿐이다.

2. 법률안의 주요골자

가. 특별검사의 임명방식을 기존의 특별검사 법안에서처럼 국회가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로 대법원에 후보자추천 요구,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국가기관이 아닌 재야법조의 공식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줌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법 제2조).

나.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대상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공범의 범위로 그 범위를 명확히하였음(법 제3조)

다. 특별검사의 직무권한을 수사와 소추 즉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하여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되어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음(법 제4조 제1,2항).

라.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임인 임명을 국회의장에게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찰과 경찰 기타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4조 3,4,5,6항), 검찰총장에게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간 및 비품, 자료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협조 하에 특별검사의 직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5조)

마. 특별검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함(법 제7조)

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직무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법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그가 소속한 법무법인은 특별검사가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하여 특별검사 직무의 공익적 성격을 보장하고자 함(법 제10조)

아.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자,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어 특별검사 직무수행의 유효성을 보장하고자 함(법 제11조)

3. 법률안 전문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별검사가 공직자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를 담당하여 그 범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히 논단하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는 재적의원 제3조에 규정한 사람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후보제청의뢰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

② 국회의장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즉시 이러한 취지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특별검사가 담당할 사건을 서면으로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의 후보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전항의 의뢰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2인 이상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검사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를 정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재한 추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후보추천을 받은 즉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한다.

⑥ 대통령은 전 항의 제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에 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규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의 공범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

① 특별검사는 제2조 제3항의 위촉을 받은 때로부터 그 임명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군사법원법 제37조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또는 군사법원법상 검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를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본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검찰총장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용인의 임명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사용인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인은 특별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검찰총장의 의무)

① 검찰총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후 지체없이 특별검사 및 그 사용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공간 및 비품 등을 검찰청사 내에 마련하고 그 뜻을 국회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즉시 그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특별검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요청하는 수사기록등 사건기록 및 그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은 특별검사가 요청하는 검사 및 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을 특별검사의 보조인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의 확장)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중 발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소추할 수 있다.

제7조(퇴임)

① 특별검사가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특별검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할 경우 국회의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제 1항, 제 2항의 경우 제 2조 제 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즉시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1항의 해임 결의, 제 2항의 사임 또는 제9조의 직무종료 보고로써 퇴임한다.

제8조(보수)

① 특별검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시기와 기준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참작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규칙의 범위 안에서 사안의 난이, 특별검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직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참작하여 국회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장을 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일당·여비·숙박료는 검사의 여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종료 보고)

① 특별검사는 직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직무의 내용과 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의 보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임 제한)

특별검사 또는 그가 소속한 법무법인은 특별검사가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 1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 4조 제 4항의 사용인, 제 4조 제 6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자 또는 제 5조 제 4항의 보조인으로서 특별검사의 지휘에 불응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 4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불응한 자
2. 제 4조 제 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검사의 지원요청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이상의 일반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
5. 법관 및 검사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 ·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및 감사, 은행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 · 단체
11. 기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